

제429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3일(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91)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92)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6)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47)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654)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8157)
1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1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1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1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17.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1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9.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2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2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6)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1)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1)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2)
- 

### 상정된 안건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 4
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 4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 4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 4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 5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91) ..... 18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92) ..... 18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6)	18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47)	18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54)	18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57)	18
1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18
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18
1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18
1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18
1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18
17.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18
1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8
19.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18
2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18
2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8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18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19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19
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1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19
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19
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19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	19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	19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	19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	19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	19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	19
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	19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6) .....	19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1) .....	19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1) .....	19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	19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2) .....	19

---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1항·제17항·제18항·제21항 및 제37항·제38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 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10시02분)

○**소위원장 김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김진아 외교부제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은 현행법에 따라 다국적군 등 그 밖의 부대 단위 해외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하는데 개인 단위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개인파병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 단위 해외파견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료 5쪽을 보시면 정의 조항에서 다국적군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단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법에 다국적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삭제하더라도 다국적군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수정이 따라야 하고 다국적군을 포함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단서 삭제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다국적군 등 평화유지군 외의 파병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안이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파견부대 정의에 개인 단위 파견을 포함시키면서 교전 중인 경우에는 개인 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범위에 파견지가 전시 상황인 경우는 평화유지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다국적군을 포함하는 조치 쪽으로 법체계의 조정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단위의 파견은 1인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 또는 그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과 개인 파견도 현행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라는 특정 형태의 파견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파견을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은 본 법의 제정 목적과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교전이 끝난 지역의 치안과 안정을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

의를 근거로 파견하는 것으로 보는 만큼 개정안에 포함된 교전 중인 국가로의 개인 단위 파견은 현행법이 소관할 사항을 벗어납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개인 파견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 측이 선발하는 인원으로 그 목표와 목적에서 부대 단위 파견과는 상이합니다.

아울러 개인 파견은 부대 단위 파견과 달리 유엔 측이 수시로 요청하며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이내에 선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부대 단위의 파견의 국회 동의 절차를 개인 파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다국적군과 국방 교류협력활동을 위한 국군 파견은 국방부의 소관사항으로 지금까지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파견동의안을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에 현행법의 소폭 개정을 통해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 파견을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외교부에서 입장 내놓으신 것이 정확한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다국적군 파견 문제는 국방부, 국방위 소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 파견은 절차상 예외적인 건데 부대 파견하고 별도로 다루는 것은 절차상·시간상 여러 가지로 무리하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국적군은 홍기원 의원님 통해 가지고 지금 다국적군 국방교류 파견 활동에 대한 법률안을 따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중에 있다고 저희는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 파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정소요상으로 짧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 법안에 넣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게 되면 그런 특정한 소요를 맞추기 어려운 그런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사실은 부대 파견이라는 것이 개인을 파견한 예는 극히 예외적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시기에 우크라이나 관련되어서 예외적으로 오해를 좀 샀던 것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개별 파견까지 규정하는 것은 외교부 쪽 입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정법률안인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16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토주권국임을 재확인하려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독도 관련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반응 등 국제적·외교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쪽부터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법률의 목적 및 국가의 책무를 그리고 안 5조 및 6조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안 제7조에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등 기존 조직과의 관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8조는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 파악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24쪽 안 제10조는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5쪽 안 제11조는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확산을 위해 외교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표기 조사활동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와 동해 표기 확산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법안의 의도와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동 법률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부 소관으로 동 법률이 제정이 될 경우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대외에 천명을 하는 듯한 역효과가 우려가 되며 일 측이 역대응할 수 있는 빌미를 다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토나 도서와는 달리 독도에 대해서만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일 측 주장처럼 독도에 국제분쟁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관련 국내법 등에 따라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대내외적 조치를 이미 현재도 충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토 관리와 환경 보전 관련 범정부 공조체계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이미 2년마다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민간 주요 지도 제작사·출판사,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 독도 및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관련 지자체 등이 구체적인 조항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이런 법령은 조현 외교부장관한테 주도권을 주는 게, 외교부 수반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법령들을 내가 다 검토하고 왔는데요, 자꾸 뭐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통일부장관이 해야 될 일은 통일부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맡고 있는 부서, 여야하고 관계없이 장관이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본을 생각해서 법을 내놓으면 인기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처의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또 위원님들.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 위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외교부 입장에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관리할 때 분쟁지역화시키지 않으면서 실효적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 분쟁지역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현재 실효적 관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독도를 지켜야 된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요성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또 다른 위원님.

지나가기 전에 저도 하나 질문을 좀 한다면, ‘독도 및 동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해서 특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이름만 바꾸는 것과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소위원장 김건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아, 내용도……

○이용선 위원 저도 한마디 할까요?

○소위원장 김건 예.

○이용선 위원 크게 봐서는 독도의 날 지정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2년마다 현황 파악 이런 건데 지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독도의 날 지정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고 역시 일본도 그러한데,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이기도 하고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분쟁 수역이나 국제분쟁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실익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외교부 쪽의 입장은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해, 우리는 동해, 일본해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 일방적이지만 동해도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위 개념의 동해라는 게 한반도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국제적으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해라는 것도 일방적이기 때문에 병기를 많이 획득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까지를 감안해서 볼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지 이런 캠페인을 위해서 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교부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독도’ 빼고 그냥 ‘영토주권 수호에’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여기 다 들으셨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고쳐서 법이 발의가 됐다 그러면 ‘독도’ 말도 못 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할 바에야…… 뭐가 무섭냐?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계산 속에 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뭐가 무서워서 독도라는 말도 못 쓰고 이렇게 법을 만드느냐?’ 법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필요해서 만든 것 같은데, 독도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일본 눈치를 보면서 독도라는 말을 뺐다 이 소리 듣느니 팬히 부질없이 문제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계속 심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재강 위원**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 해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건** 지자체에서.

**○인요한 위원** 역사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진주만 폭격하고…… 사실 러시아한테 뺏긴 섬이 위에 몇 개 있지요, 5개인가 있지요? 지금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외교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본이 독도를 요구한 것은 패전국이란 말이에요,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도 중요하지만 졌으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됐기 때문에 끝이에요. 끝인데, 우리 외교부가 조금 더, 이것 굉장히 좀 말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 독도 줄게 대마도 내놔라’ 뭔가 이런 좀……

**○김기웅 위원** 공격적으로?

**○인요한 위원** 그러니까 남이 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냈을 때는 더 말이 안 되는 이론을, ‘그래, 우리 독도하고 대마도하고 바꿔 줄게’ 이런 재미있고 코미디 비슷한 전략을, 공격적인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외교부가 앞으로 장관님한테도 그런 재미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건**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를 침입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물론 독도도 문제가 있지만 또 서해 구조물 문제도 있고 우리 주변국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 기회에 영토주권 수호에 대해서 뭔가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법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3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의 권리구제절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후관리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입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2023년 외교부 추진 안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후 외교부와 법제처 간 협의로 문구가 정리돼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개정한다면 33쪽 제일 오른쪽 법제처 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교류기여금 부과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담금의 일종인 국제교류기여금이 여권 발급 시에 여권 발급수수료와 함께 부과 및 징수되고 있어서 여권 발급 사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권리구제절차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외교부에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기여금을 환급할 경우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여금의 특성상 재단의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분담금운용평가에서 재단법 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이래 법제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도입을 추진은 해 왔으나 이러한 국제교류기여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입법 추진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권리구제절차 도입 시에 여권 사무에 미치는 영향, 환급 등 사후절차 발생 시에 기여금을 관리하는 문제, 이의신청 처리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행정적인 준비에 필요한 시간, 여타 부담금의 권리구제절차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정부입법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말씀은 외교부가 기존에 하던 게 있고 법제처랑 지금 조율 중에 있으니까 그 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인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율하는 데 행정적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행정기본법 36조에 의거해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항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요약하면 시간적으로 개정이 급한 법률은 아니고, 현재 법제처랑 면밀하게 신중히 잘 보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뭐 저도 거기에, 틀린 것은 아니네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런데 참고로 법제처와 조율은 지금 들어온 개정안의 내용대로 문구를 협의해 온 사항이었고. 그런데 최근에 외교부 내에서 이 기여금에 대해서 구제절차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아마 법안 개정 전체에 대해서 아예 본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기본법에서 개별법에서 다 사후구제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여권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후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게 맞기는 한데 기재부에서 지적하면서도 필요성은 조금 낮은 부분을 명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구제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외교부 말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개정안대로 이의절차를 규정하기보다 다른 법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반납절차를 규정한다든가 시간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가요? 외교부에서 법제처와 협의한 보완된 안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현재로는 지금 외교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재강 위원**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법제처와 조율 중인 부분은 지금 개정안의 문구를 조율해 온 건데 그 부분은 거의 최종 안이 나왔고.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 외교부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지금 그냥 외교부에만 두면 신중 검토라 법 개정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김기웅 위원** 그러면 기재부나 이쪽 의견이 있어요? 받으셨어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기재부에서는 사후구제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이미 2021년에 했습니다. 부담금 전반적인 평가 부분에 대한 거고요.

○**김기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여기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가서 심의를 할 때 법제처도 나오고 기재부도 나오고 행안부도 나오지만 사실은 법사위에서는 그쪽 부처 의견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기재부나 법제처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교부에서 실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 입장은 정확히 해 주셔야겠네요, 지금. 외교부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얼마 내에 제출을 하겠다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가 원래는 당초 9월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시행 일정 등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입법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를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그리고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 정부입법계획을 철회하는 것까지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게 영어로 딜레이 택틱(Delaying Tactic)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이용선 위원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까지 이걸 외교부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소관 안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이상 2건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43쪽입니다.

김건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공통적으로 외교부에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입법취지의 타당한 측면과—42쪽입니다—보조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 의원안은 여기에 더하여 외교부장관이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형태가 지역 고유의 특성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47쪽 왼쪽 맨 아래 표에서 보시면 첫째,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할지 또는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할지와 둘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지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둘지 그리고 셋째,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며 외교부가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법에 의거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4일 외교부 내 지자체 교류 활동 전담부서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비직제 조직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외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 만큼 금번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요한 위원**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그러면 뭐를 만드는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런데 저희 외교부에서도 어쨌든 5년간 공공외교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지자체의 그 의견을 100%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또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건** 제가 위원장이지만 제가 제안한 법률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관장 벤쿠버 총영사를 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엄청 오더라고요. 출장도 오고 MOU도 맺고 그다음에 자매도시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괜찮은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우리나라 대외 정책하고 꼭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독도에 대해서 와 가지고 분쟁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곤란한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런 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는 얘기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와 가지고 활동하실 때도 좀 외교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외교하고 다르면 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서, 공공외교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더라고요. 와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가끔은 중앙정부의 지침하고의 방향하고는 달라질 때가 있어서 최소한도 그것은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인요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사실은 저도 한정애 의원님처럼 아예 그런 것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한정애 의원님처럼 용기 있게 아예 ‘설치하라’ 이렇게 법안은 못 냈고 지금 있는 부서 중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부조직법과 충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 의견을 드리면 먼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사들이 다 가 계시잖아요. 중요 큰 데는 다 나가 있고 그분들이 그냥 대사가 아니고 거의 공관장 다 하시고 마지막에 거의 가시는 분들, 굉장히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지자체의 주요 대외활동—지자체 단체장뿐만 아니라—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회의 가서 그것 얘기하시고, 국회의장실에도 특보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자문하라고 내려간 게 지방 대사들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온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지방 대사들이 일 안 했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김건** 아니요, 그게 문제가 지방 대사들이 도지사 이런 데만 나가 있거든요. 광역 단위만 나가 있어서……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장만 보실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간 역할이, 제 얘기는 그겁니다.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밑에까지 시의원들 갈 때까지 다 가이드 해 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걸 만드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첫째는 그 가이드라인 하는 거야 나쁠 거 없지요. 만들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 해 가지고 참고하시라고, 해외 나갈 때 가시는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개황 자료와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는 건 좋은 일 같아요. 그것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 전담부서 지정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행안부도 중요하지만 기재부도 중요하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는 건데, 혹시 그전에 외교부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에 이것을 한번 타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입법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나 행안부의 입장을 물어보신 적이 있나 이거지, 여기 오시기 전에라도 외교부에서.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행안부의 입장인데요. 전담부서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의 보조기관인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것……

○**김기웅 위원** 알고 있어요, 신중 검토.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기재부는 안 물어보셨지요?

부서 만드는 건 어쨌든 두 기관이 다 공통이고……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기재부는 저희 아직까지……

○**김기웅 위원** 기재부가 조금 더 엄격해요, 행안부보다는.

그런데 뭐 이것도 법사위 가면 물론 기재부나 행안부가 반대하겠지요, 기본적으로. 영으로 하라고 그럴 거고, 이걸 영으로 해도 좋은데 저는 뭐 상관없이 여기 공공외교총괄과하고 지방민생팀이 왜 1차관 2차관 나뉘어 있어요, 소속이? 이유가 뭘까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이게 비직제로 저희가……

○**김기웅 위원** 팀은 비직제예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비직제로 일단 팀으로 꾸려져 있고요. 그리고 조정기획관 밑으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교부에서 지금 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직제에는 안 넣고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해 주니까 예산만 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디다 슬그머니 집어넣고 일을 하는 게 다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필요한 조직이면 행안부 기재부 설득하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제대로 조직을 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대로 외교총괄과 옆에 뭐 지방전담과를 하든지 지방외교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비정상적으로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협조도 안 되고 지금 보면 좀 어중간하게 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떠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자,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추진하시고 이것들을 이번에 입법취지 하신 대로 조직을 정비하자 해서 하나의 과로 만들어서 행안부랑 기재부랑 한번 제대로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것 설득력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정부 부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정부 부처들, 감사원이고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와 협안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고.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방부도?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그 나라별로 주요 개황도 만들지만 그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와의 주요 협안이 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뭐다,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그것을 1년에 한두 번씩 발간해서 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뿌려 주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걸 법으로 해서 뭘 하라 마라,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은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하고 강제성은 안 좋다 이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건 가이드라인이니까요. 가이드라인은 지침이지요, 준수.

○인요한 위원 좋고. 뭘 강제성으로 하지 말라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소위원장 김건 예.

○이용선 위원 가이드라인은 굳이 법에 명시할 필요 없고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조는 맞잖아요. 그 점은 이견이 없고.

그런데 전담부서는 법의 형식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 그 부서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기재부는 아마 문의는 안 한 것 같고 행안부하고 협의했을 때 법의 형식의 문제,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을 왜 법에 규정하나 하는 거지 소위 공공외교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지자체에 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게 지자체가 아니고 외교부에 하는 거예요.

○이용선 위원 외교부에?

○김기웅 위원 외교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에 지금 과가 2개 있는데, 총괄과가 있고 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김건 그런데 그 관계를 좀 클래리파이(clarify)하고 싶은 게 행안부의 의견이라는 것은 한정애 의원님이 얘기하신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이것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똑같이 문제로 삼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둘 다 마찬가지?

○**이용선 위원** 둘 다인가? 양쪽 다 아니에요?

○**김기웅 위원** 다 같은 성격이잖아요. 영으로 규정해야 될 사항을 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재강 위원** 제가 경기도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과에서 이 일을 했어요, 실제로는. 전담부서는 아닌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중요한데 한정애 의원안처럼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지정할 수 있다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아시다시피 대사들 다 와 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 무슨 무슨 외교관 출신이라는데 찾으면 없고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ODA도 제가 다 했는데 거의 평화협력국에서 공공외교를 다 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전담할 수 있는데, 그 성격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 한 명 빼기도 쉽지 않은데 전담부서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는.

○**김기웅 위원**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령에서 할 얘기지 법에 넣을 얘기는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어차피 법사위 검토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활동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행안부에서 받을 수 있을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토해서?

○**이용선 위원** 그야말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걸리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래서 아마 이제 한정애 의원안보다 행안부의 그런 지적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위원장님 안이 나왔는데 행안부에서는 어차피 이게 비슷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 아니냐라고 봐서 법사위에서 아마 반대 의견을 제시할 거라……

○**이용선 위원** 체계 심사에서 걸릴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의결을 하고 법사 조율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은 살려 놓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포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의견 드리면 저도 일을 해 봐서 그런데 굳이 이걸 법에 넣어서 할 수 있다 없다 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에 내려간 대사들께서 그 장한테 내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 일을 뒷받침할……

○**이재강 위원** 대사는 일을 안 한다니까.

○**김기웅 위원** 대사님께서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일을 좀 뒷바라지할, 그래도 복사라도 해 줄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전담과를 하나 지정해 주세요’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담 과들을 지정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것은 지자체 전담부서 얘기고 지금 이 법안은 외교부에 전담

을.....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는 아까 말한.....

○이재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메이저 도지사 정도가 되면 대사가 있지만.....

○김기웅 위원 지금 전담부서 지정이 지방자치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강 위원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어요.

○김기웅 위원 외교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외교부.

○김기웅 위원 외교부는 그냥 장관이 지정하면 되지.

○소위원장 김건 아니, 그래서 외교부에서 지금 이제 비직제 조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이미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자꾸 묻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문제를. 그런데 일본 문제면 일본과에 묻고 중국 문제는 중국과에 묻고 이러면 사실 그 과들이 뭐 대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 필요로 지금 저기서도 비직제로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을 에둘러 피해 가면서 근거를 만들려는 거다 이렇게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마저도, 지정마저도, 그렇지요?

○인요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나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규제는 트럼프가 하나 만들면 10개를 없애자는 주장이거든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용선 위원 그러면 이게 법리 논쟁이 걸려 있으니까.

○김기웅 위원 일단 계속 심사하도록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저희가 지금까지 행안부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서만 들었었는데 그러면 다음 소위 전에 행안부 쪽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같이 어디까지 용인이 가능한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일단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하고 다음에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 시작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통일부차관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 시작 전에 우리 전문위원회로부터 소위자료 작성 등에서 통일부의 안건에 대한 입장 제출이 매우 지연되어 위원회 안건 심사 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안건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많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해태하거나 장차관 보고가 늦어져 그렇다고 이유를 대는 등 고의성이 다분한 지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 안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부 내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소위 심사 안전 및 신규 상정 안건에 대한 부처 입장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91)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92)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6)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47)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54)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57)
  1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1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1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1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17.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1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9.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16)
  2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2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6)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1)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1)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2)

(10시59분)

○**소위원장 김건**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0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남중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6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6항부터 8항 그리고 11항을 끊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11항 송재봉 의원안의 경우 올해 2월 14일 날 발의되었고 2월 17일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어제 9월 2일 자로 저희 소위원회로 직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내용, 둘째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관련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셋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실시 초·중등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화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운영 경비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2차적으로 통일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기준의 소위 심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도 현재 시·도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이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관련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1항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기원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의 경우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통일부가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기준에 밝혔고 이번에 송재봉 의원안, 정착지원협의회 심의사항에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박충권 의원안인데,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단체가 설립된다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대표단체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해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정책 보완 등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기존 단체와 별도로 법정단체를 새롭게 설립하게 될 경우 기존 단체와 중복 및 갈등 우려가 있고 대표단체 설립에 관하여 기존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들과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통일부 의견은 조금 이따 차관으로부터 들으시고 법무부가 관련하여 의견을 냈습니다.

17페이지 중단입니다.

법무부는 법정단체로서의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이미 통일부 등록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남북하나재단 등 기존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와의 업무 중복성, 기타 보훈단체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법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입니다.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안인데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1997년 7월 14일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27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대국민 홍보 사업도 상당히 진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이 일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이와 함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김남중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먼저 북한이탈주민법 6·7·8번, 11번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하는 송재봉 의원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탈북 청소년 지원 의무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1차 감독기관이 시·도교육청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협의체 신설 관련해서, 지금 정착지원협의회가 있어서 그 밑에 교육지원소위원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률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서 신중 의견입니다.

그리고 박충권 의원님 북한이탈주민법의 단체 설립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통일부에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가 한 15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으로 구성된 단체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신중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홍기원 의원님 북한이탈주민법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지금 탈북민들 의견들이 하나만이라든가 통일민 북향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북민으로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북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북 5도민도 있고, 저희 아버님도 이북 사람이거든요, 황해도. 그러면 이번에 나온 사람 말고 과거부터 와 있던 실향민들도 다 이북민이에요. 이북민이라고 용어를 부르기 시작하면 탈북민 말고 실제 이북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이북민 테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굳이 이것을 이북민으로 바꿀 실익이 없다. 그리고 멀쩡하게 있던 이북5도민들 다 이북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북한이탈주민법 지원 대상도 아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체 관련해서는 지금 차관이 얘기했지만 탈북민 단체가 워낙 많고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도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또 하나 고려할 게 이북5도위원회가 있어요, 이북5도 지사도 있고. 사실 탈북민이라고 해서 따로 단체를 만들지만 우리 행정구역으로 이북5도민이거든요. 사실 이북5도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사실 지금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

니까 이 부분이 법정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지 법정단체 하나 만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맞지 않고.

이탈주민 지원 많이 하는 부분은 물론 안됐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탈주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트리트(treat)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 체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일반 법 체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이탈주민법에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 때문에 같은 국민인데 특별하게 다른 걸 자꾸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분리하는, 특별히 바라보는 뭔가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존의 법률을 존중하고 대신에 안 되는 부분, 미비하다 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탈북민이라고 해서 자꾸 특별하게 기존의 법률보다 뭘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유리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앞에 있는 부분들도, 뭐 통일부도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 기존 법률을 존중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북쪽을 한 30번 다닌 사람으로서 그 용어에 있어서는 엄격히 얘기하면 자꾸 북한이라는 용어를 남쪽에서 쓰는데 북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북조선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서 자꾸 우리를 보고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남한하고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정확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고. 이북민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너무 정확해요. 나는 홍기원 의원의 의도는 150% 존중하고 그러나 먼저 말씀한 것처럼 혼돈도 가져올 것 같고,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법들 전부 다 짜잡겠는데요. 그것은요 정동영 통일부장관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뭐를 따로 자꾸 만들고 뭐 하고, 이게 뭐랄까 관료적인 악동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그 부서, 제가 계속 똑같이 초지일관되게 같은 얘기 하는데 이것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의 밑에 두고 장관님이 알아서, 지금도 단체들이 엄청 많는데 장관님한테 힘을 실어 줘야지. 그래서 장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아주 뭐 견해들이 거의 일치되고 있는데, 그 북한이탈주민 명칭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되기까지도 과정이 사실 복잡하고 시간이 꽤 걸렸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많고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북민은 김기웅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타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면 통일부가 용역을 한번 좀 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쳐보는 게 어떨는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교육지원 관련된 것은 그 틀을 별도로 짜는 것은 이미 틀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송재봉 의원안을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핵심은 뭐냐 하면 소위 비인가 기관 같은 데가 사각지대가 있는 교육,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에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게 맞고 2차적으로 통일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가가 아니라 비인가 기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협의체에 교육지원 내용을 넣되 그 부분들을 일차적인 책임기관인 시·도교육청이 하되 부족한 부분을 통일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이것을 수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나재단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실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을 정리할 때 입법취지가 동일하다면 통합 조정해 가지고 대안을 성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홍기원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까지 포함해서 입법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성안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김기웅 위원 지금 대안은 의미가 없잖아요, 다 신중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용선 위원 송재봉 의원안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는데 그 내용이.....

○김기웅 위원 그걸 법 개정으로 해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굳이 법 개정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고.....

○이용선 위원 그렇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를.....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굳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비인가 교육기관 찾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명백화하는 건데 영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아주 실무적인 거지 이게 뭐 법을 개정.....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시행령이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요. 법률에는 굳이 안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4건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먼저 박충권 의원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게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날에서 유래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와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되었으며 작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에는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자 인도적 지원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반드시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3항부터 15항까지 김용태 의원안, 김기웅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김용태 의원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교섭단체가 추천할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 김기웅 의원안은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가 지연되어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셋째 추경호 의원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용태 의원안을 따를 경우에는 여당 또는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 이사와 통일부장관이 추천·임명한 인사만으로도 과반수 임원진이 구성되어 재단 출범이 가능하게 되고 재단 운영을 통하여 현행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증진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도 일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기웅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신속한 재단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도 일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들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우선할 것인지, 현행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에 따른 재단의 중립성 등을 우선할 것인지와 함께 국회가 각종 인사 추천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 온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먼저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교육주간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별도로 북한인권을 북한이탈주민하고 너무 과

도하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약간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 내지는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인요한 위원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건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 인권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북한인권법을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북한인권재단 관련된 부분은 북한인권법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상당히 여러 해를 거쳐서 논쟁이 되다가 여야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의라든가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 고려할 때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원님들……

○인요한 위원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나 못 알아듣겠어.

○소위원장 김건 다 신중하게, 다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용선 위원 북한인권 주간 설치하는 문제는 통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탈북자들이 전부 북한의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것도 아니고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통일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권재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은 대부분 이사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역사가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집권 여당 쪽에서 이사장과 상근이사를 다 맡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1대 합의는 상근이사를 둘을 뒀어서, 여야가 나눠서 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조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면서 지금 절차법 위주로 제기돼 있어서 이 문제를 아직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별로 합리적 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웅 위원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오죽하면 이런 개정안이 나왔겠냐. 인권재단 9년이 지나도록 5명 추천하면 될 일을, 지금 같으면 12명 중에 통일부장관이 2명 임명하고 그것도 위원장하고 상근이사 다 할 수 있고, 5명 추천하면 7명이 다 주도해서 이 인권재단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잖아요. 추천하면 7명이 다 이쪽에 여당, 정부 인사들인데 그러면 인권재단을 본인이 다 주도해서 끌고 가면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뜻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7명 거기다가 이사장·상근이사까지 다 정부가 임명하고 있고 7명이 다 여당 인사들인데, 회의를 해도 결정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

고 집행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근이사 하나 더 두는 것도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노력하신 것도 알고 그런데 그건 기재부에서 지금도 찬성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일이고 거기에 상근이사 둘을 둘 필요가 있느냐 가지고 다시 논쟁이 붙을 수 있고 지금도 안 하는데 야당 뭇 상근이사 하나 더 만들었다고 민주당에서 5명 추천할 거라고 예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현 상황에서도 안 하고 계신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권재단이 싫으신 거지요. 출범하는 것 자체가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안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별로 내켜 하지 않으시니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의견은 여기까지만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추가로 더 위원님들……

○**이용선 위원** 간사 간 협의를 좀 했습니까?

○**소위원장 김건** 이 문제로 간사 간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실은 여당에서 이걸 임명한다는 방침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여당이 되셨으니까.

○**이용선 위원** 그 문제는 좀 논의하고 통일부에서도 이게 이전의 여야 간 합의를 다시 재확인하면 행안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상근이사를 늘리는 문제에 관련된 정부 간 의견 조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고 나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면 이걸로 토론은 시간 관계상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이재강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안과 이재강 의원안의 경우 어제 9월 2일 자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 바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 상정된 안인데.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하에 통일부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그리고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평화이용지구를 지정 하는 한편 그 조성과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

그리고 비무장지대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들은 DMZ(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이용을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율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비무장지대가 현재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규정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하에 있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로의 출입 및 사업 수행에 군사정전위원회의 사전허가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이용 규제와 관련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존 법률들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 내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 및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이용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규정 등을 비롯한 기존의 다른 법·제도 등과의 관련성, 정부 내 각 부처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동 제정안들은 사실상 첫 심사인데 조문별 심사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으실지……

**○이용선 위원**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전반적으로 입법취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3개 법안의 내용들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3개 법률안 전체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출입과 관련된 조항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병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관계부처 의견은 좀 받으셨나요? 정전체제 관리하는 게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다 걸리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앞에 있는 법률은 관계부처 의견을 들었고요. 한 부분은 아직까지 일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수렴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요한 위원** 휴전협정을 실제로 통역했던 원득한(언더우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 남북,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임진강 하류하고 한강 만나는 데는 같이 이용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휴전협정하에서는 양쪽 국가가 다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엔을 따지고 무슨 국방부 따지고……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 대한민국 땅인데 이 땅을……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당 차원에서는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북하고 얘기가 된다면 휴전협정에 따라서

한강 하류도 레저보트도 좀 띄우고 이용하는 것이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강 위원** 정전협정 말씀하셨지만 정전협정에 의하면 영어로 밀리터리 인 캐릭터 (military in character), 군사적인 것에 한해서 비무장지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정위라고 하지요, 군사정전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중국하고 북한 총 5명 이쪽인데, 1991년 이후로 군정위에서 비무장지대 출입을 관장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유엔사가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강의 중간에 배를 띄워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배를 띄울 수 있거든요. 배를 띄우려고 시도했는데 제가 부지사 할 때 못 했어요. 못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도라산 전망대에 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는데 또 안 되고…… 지금 그것 아십니까? 도라산 전망대는 하루에 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것 모르시지요? 제가 또 있을 때 연천의 비무장지대 안에 9만 5000평의 평화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접경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동영 장관이 판문점에 가기로 돼 있는데 못 가게 기자들 출입을 막아 놓은 것도 유엔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를 저희들이 생태관광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그냥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바람과 나무와 동물만 자유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정말로 우리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법안을 보면 3개 법안인데 이병진 의원은 기존에 있던 법안을 재탕한 거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생태관광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유엔사의 권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지해서 평화적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로 접경지역의 상생과 협업을 강조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 통일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다 이야기됐는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데 특히 비무장지대에 이런 개념을 도입했고 자체 협업이 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병진 안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은 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안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출입과 반입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가장 명시적이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무제한으로 출입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출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이것이 허용돼야만이 남북한 간의 평화도 앞당기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동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협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통일부 의견, 통일부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입장이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용선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국방부나 이런 쪽에 의견 수렴을 안 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앞의 부분, 이병진 안하고 한정애 의원안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이용선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네요. 적극적으로 정부도 수용하면……

○소위원장 김건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게, 여기 자료 64페이지를 보면 국방부 입장이 나오는데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타 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래서……

○김기웅 위원 물어보나마나 당연한 얘기고.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우선 법리적으로, 2000년에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남북 통행 관련한 3통 합의가 있었어요.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경의선·동해선 출입을 할 때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때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느냐 가지고 남북 간에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웃더라고요.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국방장관인 인민무력부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대. 국방부 조성태 장관이 우습게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북한도 법리 검토를 하고 다 내려왔는데 ‘남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할 권리가 있느냐. 유엔사에, 미군한테 물어보고 왔느냐’ 이렇게 회담에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더니 유엔사에서 좀 어이없다는 답이 왔어요. 관할권하고 행정관리권하고, 그러니까 주리스狄션(jurisdiction)이란 관할권과 관리권의 개념이 다른 것이고 우리한테 엔도스(endorse)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권인데 정전협정 마지막에 보면, 이 정전협정 내용은 체결 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까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평화적 이용 이런 말을 붙여서 우리 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다시 정치적으로 가면—우리 땅은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우리 땅인데 우리가 우리 땅에 가는데 누가 그것을 막고 가라 마라 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가면 내 땅 니 땅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나간 얘기고.

지금 이게 생긴 이유를 보면 6·25전쟁 때문에 군사분계선이 생기고 충돌을 막기 위해서, 거기 민간인이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이 가면 큰일 나니까 2km씩 밀어 가지고 완충지대, 벼페존으로 하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 충돌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벼페존인데 96년에 저희가 접경지역법을 만들었어요, 행안부가 관리하는. 지금 접경지역법 종합계획 진행 내용 보시면 접경지역 자체가, 그것도 제대로 안 굴러가요. 그런데 그것 넘어서 비무장지대까지 들어가서 평화적 이용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1년에 두 번씩 봄가을로 화공이라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다 불을 지릅니다. 남아 있는 생태계 없어요. 가 보면 맨날 1년에 두 번씩 불 질러서 다 태우는데 무슨 그 안에 생태계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 불 만한 게, 관광명소 이것도 내가 불 때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접경지역에 옛날 땅 주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전부 개발한다고 땅값이 오르니까, 거기 안에까지 다 비무장…… 장단콩마을까지 주인이 나타나서 개발한다고 돈 달라고 난리거든. 그동안 쓴 것 손해배상 청구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제 주장은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 평화적 이용이니 내 땅인데, 관광이 어떻고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2km 그게 뭐 대단한 땅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굳이 뭘 보겠다고 거기 들락거리고 나면 국가안보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평화를 위해 서라도 2km·2km 베폐존은 존중되고 정전협정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지. 군정위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우리도 너희 어차피 영터리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기존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2km는 그냥 잘 보전하자, 놔두자. 그것 건드려 가지고 가 봐야 되겠다, 평화적 이용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유엔사의 권능을 존중해야지요. 실제로 권한을 가진 곳인데 내 땅에 왜 못 가게 하냐고 싸우자고 그러면 그것도 재가할 도리는 아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쪽도 법상 권능을 가진 기구인데 개들이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초기경 간 것도 보니까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켜서 그렇고, 장관 못 가게 한 것은 기자단 따라오는 것을 불허한 건데 그것을 설득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판문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일반 참관 해 달라, 여기도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은 학술적인 필요가 있으니 좀 들어가서 보게 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잘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정전협정과 부딪힐 수 있는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 논의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강 위원** 잠시만요. 예를 들면 도보다리 기억나시지요? 도보다리 요즘 못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커피 마셨잖아요. 왜 도보다리 못 들어갑니까? 홍수가 나 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움직여 가지고 도보다리 들어가다가 터질지도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연천에 있는 평화농장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일부지만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군정위 91년도에 없어져 버렸는데, 군정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판문점 가 보셨어요? 판문점 가 보면요 미군 소령·중령이 나와 가지고 가이드 해요. 거기는 비무장지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엔사가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지.

○**김기웅 위원** JSA를 누가 관리하는데요? JSA 이름이 뭐의 약자예요?

○**이재강 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 2km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제가 있을 때 저희 제거하는 세계적 단체를 불러 가지고 연천에 가서 폐포먼스도 했는데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정전협정을 지켜서라도 평화적 이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저도 위원으로서 지금 이재강 위원님 하신 말씀에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정전의 중단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6·25전쟁이 있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정전

상태로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정전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지금 정전 상태라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동시에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렇게 이중적 성격이 같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헛갈리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은 확실한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허무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정전체제 무실화책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군사정전위도 지금 안 열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정전체제를 무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법을 해 가지고 우리마저도 정전위나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려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화적 이용의 각도보다 그러한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요.

**○이재강 위원** 정전협정을 지키는 것이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인요한 위원** 재작년에 미군 한 사람이 북쪽으로 튀어 버렸지요? DMZ, 판문점에서 가 버렸는데 그 사람이 많은 물의를 일으켰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 범죄자더라고요, 본인이 법을 많이 어기고.

여야를 떠나서 존경하는 이재강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가까워요. 그러나 한 가지 보완을 한다면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의 생태를 보존해야 될 곳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국립공원 공무원이 동행을 하고, 딴짓거리 하는가 딴생각 가지고 있는가 사람도 미리 검증을 하고, 갑자기 들어가서 북쪽으로 가 버리겠다고 뭔가 좀 굉장히 돌발적인…… 아무나 그런 지역에 들어갈…… 그러나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한 밑에 있는 무슨 회의가 결정을 해서 행사도 결정하고 사람도 좀 스크리닝하고 검증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다.

한강 하류를 또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한강 하류도 나는 궁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옛날에요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사실 얘기하면 언더우드 가족이에요—마포 나루터에서 소래까지 배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강을 마음대로…… 우리가 한강에 한강 하류를 좀 비껴가는 수로를 만들었지요. 문제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정전협정에 같이 쓰게 돼 있고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규정을 100% 열어서 아무나 그냥 아무 검증 없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은 김건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스크리닝, 검증이 된 단체와 사람들이 누구의 입회하에 안내를 받고 평화적으로 앞으로 그 땅들을 다…… 지뢰밭·지뢰가 없는 데, 지뢰도 좀 중요한 얘기예요. 지뢰밭에 가서 사고 나면 또 큰일 나지요. 그런 정도 차원에는 열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법령이지만 제 얘기는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우리를 볼 때…… 이것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70년도

에 북쪽 군인들이 DMZ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와서 옷 벗고 총 벗고 막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러운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유가 없냐?’, 남한 군인들을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국군들을 놀렸어요. 거꾸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이 많고 우리가 자유스럽고 그렇다는 것을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협박하거나 무슨 방송을 하거나 이것은 다른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 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재강 위원님.

○이재강 위원 제가 강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DMZ는 좋아요. DMZ 2km는 안 들어 가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접경지역이 경기도·강원도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접경 지역 이게 대통령령, 비무장지대 일원이라는 데 비무장지대(DMZ)와 연접한 접경지역들이 지금 이용을 제한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 개발법이 있어요. 이미 97년에 됐잖아.

○이재강 위원 있는데……

○김기웅 위원 DMZ 2km 밑의 민통선 부분을 전부 할 수 있도록, 2km 밑의 접경지역은 전부 그 법에 따라 5개년 개발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다, 매년 관에서 참여를 하는 데……

○이재강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 접경지역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접경지역 소위 비무장지대 일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김기웅 위원 비무장지대 2km는 놔두고 접경지역법을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하면 되지 왜 비무장지대를 들고 들어와서 복잡하게 만드시냐고.

○이재강 위원 비무장지대를 들고 나오다니요. 비무장지대 있는 건데 왜 들고 나와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지만 그것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건 그래서 오늘 아까 이재강 위원님께서 좀 더 공부를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저희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재강 위원 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맞아요.

○이용선 위원 이게 아마 제정법이니까, 공청회를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김기웅 위원 안 했지.

○이용선 위원 안 했으니까 오히려 공청회를 거치면서 국방부나 부처 의견 수렴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논의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데 이게 출입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남북 간에 협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전전전 정부부터 죽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자체가 정부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굉장히 법적인 기반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 있는 출입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어차피 유엔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그것은 맞고, 단지 유엔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영토주권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소위원장 김건 예, 이것은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그다음에 관계 부처하고도, 여기 외교부 의견도 없는데 좀 더 하고 정전협정을 우리가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공부도 좀 더 하고 해 가지고 계속 논의하도록,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중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김 건 김기웅 김상욱 이용선 이재강 인요한

### ○출장 위원(2인)

김준형 홍기원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

조정기획관 문인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공공문화외교국심의관 혀정애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